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(제16592호/19.11.26.개정/20.11.27.시행)에 따라 제때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
- 매장문화재는 보호를 위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발 사업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허가를 득한 이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이 때 조사 중 면적, 기간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변경허가는 행정규칙(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)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법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. 이에 따라 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 주로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굴조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도·감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부실조사 예방 및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.
- 그 밖에 발견매장문화재에 대한 보·포상금 지급 제외, 조사요원 교육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의2)
- 나.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사항 등(안 제11조의2)
- 다.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(안 제27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제5항제1호”를 “제6항제1호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)”을 “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)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발굴허가의 변경) 법 제11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발굴 기간의 변경
2. 발굴 면적의 변경
3. 발굴조사 유형의 변경

제11조의2(발굴현장 안전관리 등)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굴조사 인력,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
2. 발굴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발굴조사 관련 행정서류 등 비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발굴허가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③ 문화재청장은 발굴현장 점검에 갈음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의 점검 및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
2. 제17조의 발견신고를 7일이 초과하여 한 자
3.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27조의2, 제27조의3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조사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)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감독상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1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기준 관련 자료
2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제27조의3(조사 요원 교육)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 및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전문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횟수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1호	300만원
2.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2호	300만원
3.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3호	300만원
4.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4호	300만원

5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5호	300만원
--	---------------	----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) ① (생략) 1.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(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. ~ 4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제4조(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제6항제1호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) ① ~ ⑤ (생략)	제6조(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0조의2(발굴허가의 변경) 법 제11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발굴 기간의 변경 2. 발굴 면적의 변경 3. 발굴조사 유형의 변경
<신설>	제11조의2(발굴현장 안전관리 등)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 사항은 다음 각

호와 같다.

- 발굴조사 인력,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
 - 발굴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발굴조사 관련 행정서류 등 비치에 관한 사항
 - 그 밖의 발굴허가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현장 점검에 갈음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의 점검 및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.

제23조(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

제23조(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

금 등) ①·② (생략)	금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	1.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
	2. 제17조의 발견신고를 7일이 초과하여 한 자
	3.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<신설>	제27조의2(조사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)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감독상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	1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기준 관련 자료
	2.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<신설>	제27조의3(조사 요원 교육)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 및 매장

	문화재 조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전문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<신설>	제3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